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31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출받아 보관중인 B의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C의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B이 C으로부터 ○○시 D 일원의 38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수하고 이를 E 등 26인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2. 26. 원고가 공개를 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피고가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B이 자신의 탈세 혐의를 해명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이기에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

나. ○○세무서장이 2023. 10. 19. 피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송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을 이유로 과세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세무공무원은 국가행정기관이 조세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송부요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세무서장의 요청에 응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부당한 처분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86조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21. 피고에게 B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E 등 26인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법인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B에 대하여 B의 ○○○○은행 C토지거래전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9. 12. 13. 원고에게 'B의 C토지거래전용계좌 및 C의 계좌 확인결과 C과 합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미등기전매 하였다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신고금액에 허위가 없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잔금이 들어 왔는지 등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B과 C에 이 사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국세기본법 제8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4조에서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는 부천세무서 혹은 부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인 원고이므로 국가기관 혹은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의 정보송부요청을 피고가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판사 신○○

판사 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별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소추)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의 불복·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질문·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평가·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07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끝.